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충민원의 정의에 검찰·경찰의 처분 등에 관한 민원 포함〉

■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47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 고충민원의 정의에 검찰 경찰의 처분 등에 관한 민원 포함	3

I. 제안경위

1.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5. 5. 19.
3. 회부일 : 2025. 5.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수사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되면 누구든지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조사해 시정 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처분은 고충민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사각지대를 만들고, 시민 권익보호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지연, 소극적 처리, 무리한 수사, 직권남용 등은 시민의 일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고충민원 정의에 ‘검찰, 경찰의 처분·수사 등에 관한 민원’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

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 권리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5호).

Ⅲ. 검토의견 : 고충민원의 정의에 검찰·경찰의 처분 등에 관한 민원 포함

□ 개정안은 고충민원의 정의에 ‘검찰, 경찰의 처분·수사 등에 관한 민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u>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u> 을 말한다.	5. ----- ----- ----- ----- ----- ----- ----- <u>민원(검찰, 경찰의 처분·수사 등에 관한 고충민원과 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u> -----.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는 고충민원을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내용에 대한 민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 법 제20조제1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제20조제3항)하고 있음.¹⁾²⁾

또한 동 법 제43조제1항은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은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중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동 법 시행령도 “고충민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2조(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등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은 고충민원을 5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5개의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구성위원의 변경이나 소위원회 구성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사안의 처리나 원격영상회의 방식 등 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⁴⁾

5개의 소위원회의 소관 분야를 살펴보면, ① 일반 행정 및 사회 관련 분야, ② 경제관련 분야, ③ 건설관련 분야, ④ 국방·병무·

3)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17조(소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1. 행정·교육·문화·복지·노동·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2. 세무·농림·수산·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3. 주택·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4. 국방·병무·보훈관련 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 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보훈관련 분야, ⑤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바, 이에겐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즉, 현행법상 권익위가 처리하는 고충민원 분야에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활동이 특별히 제외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사기관의 처분 및 수사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수사 절차상 또는 수사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민원으로 한정) 중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충민원은 배제되어 있음.

- 실제로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고충민원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익위에 많이 접수(2024년 3,0464건)되고 있으나, 처리는 되고 있지 못함.

<최근 분야별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건수 현황>

분 야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일반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	22,315	22,475	22,236	21,957	32,233	30,793	32,529	32,166
세무·농림 등 경제관련 분야	6,831	7,829	3,404	3,572	4,755	4,790	3,781	3,297
주택·건축 등 건설관련 분야	19,990	21,222	7,466	7,459	3,649	3,402	2,430	2,856
국방·병무·보훈 관련 분야	1,758	1,782	1,107	1,188	1,217	1,182	959	1,000

분 야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접수건수	처리건수	접수건수	처리건수	접수건수	처리건수	접수건수	처리건수
경찰관련 분야	2,758	2,751	2,282	2,273	1,699	1,727	1,931	1,930
기타 분야	2,771	2,821	1,074	1,149	837	687	1,287	1,300
합계	56,423	58,880	37,569	37,598	44,390	42,581	42,917	42,549
검찰공수처 분야)	1,988	-	3,571	-	3,380	-	3,046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개정안은 고충민원 정의에 ‘검찰, 경찰의 처분·수사 등에 관한 민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 권리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행령에서 소위원회를 5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찰 관련 분야가 제외되어 있는바,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검찰의 처분·수사 등에 관한 사무가 고충민원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고충민원에 관한 현행법의 체계에 비추어 개정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함.

○ 현행법은 고충민원을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5) 현행법상 검찰관련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권익위는 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검찰로 이송하고 있음(합계에 미포함)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제5호).⁶⁾ 정의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에 관한 민원이 고충민원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이 명확함.

-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에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두면서도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그 밖의 수사기관의 처분·수사 등의 고충민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고, 검찰 관련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접 처리하지 않고 검찰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민원의 범위를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임의로 축소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과 업무 처리임.

이는 검찰사무의 준사법적 성격이라든가, 검찰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형사법상 고유의 사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행령에서 검찰 관련분야의 고충민원을 배제한 것으로 이해됨.

6)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고충민원이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제43조제1항제3호)⁷⁾하고 있으므로, 고충민원의 성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하거나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현행법에 따라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경찰 관련 분야와 마찬가지로 검찰관련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관계기관(법무부·경찰청)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임.⁸⁾

7)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8) 다만, 현재 동 개정안에 대하여 경찰청은 신중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법무부의 검토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나, 과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찰 관련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추진 과정이 법무부의 이견으로 중단된 바 있다고 밝힘.

문 의 처
02)6788-5110

